

【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4조(저축계약의 성립)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(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. 이하 "저축통장"이라 한다)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 align="center"><신 설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조(저축계약의 성립)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(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. 이하 "저축통장"이라 한다)을 교부한다. 다만,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저축계약 성립 시 저축통장 교부 의무 삭제 및 거래방식 명확화</p> <p>호 이동</p>
	<p align="center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추가</p>